## 슈퍼컴퓨터운영위원회규정

- 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슈퍼컴퓨터의 도입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자문, 정책의결 등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슈퍼컴퓨터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7.1.1.)
- 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슈퍼컴퓨팅융합응용센터장, <u>정보인프라팀장</u>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09.7.1, 2011.4.18, 2012.8.1., 2014.3.28., 2017.3.1.)
  - ② 위원장은 슈퍼컴퓨팅융합응용센터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한다. (개정 2009.7.1, 2012.8.1, 2014.3.28.)
  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09.7.1.)

제3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- 1. 슈퍼컴퓨터 도입 선정에 관한 사항
- 2. 슈퍼컴퓨터 관련 정책의결 등에 관한 사항
- 3. 슈퍼컴퓨터 관련 효율적 활용방안 자문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(조개정 2007.1.1.)
- 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조개정 2007.1.1.)
- 제5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슈퍼컴퓨팅융합응용센터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. (개정 2009.7.1, 2011.4.18, 2012.8.1, 2014.3.28.)

제6조 (삭제 2007.1.1)

제7조 (삭제 2007.1.1)

제8조 (삭제 2007.1.1)

제9조 (삭제 2007.1.1)

- ① (준용)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것은 관계법령에 따르며 기타 특별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은 후 시행한다.
- ② (시행일) 본 규정은 199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제1항 제2항, 제5조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